김해시복지재단

협 약 서

김해시복지재단 •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• 김해시사회복지사협회는(이하 "협약기관"이라 한다) 원활한 사회복지사보수교육 과정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 본 협약을 이행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보수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지역 내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과 윤리의식에 대한 제고 및 통합적 전문가로서 역량강화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원칙) 협약기관은 지역 내 사회복지사들에게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함에 있어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(협약기관의 역할과 의무) 본 협약의 협약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의 이행 및 이에 따른 목적수행을 위해 상호 협조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.

1. '김해시복지재단'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정의 교육생모집, 강의장소 협의, 강사지원, 시설지원 등 원활한 교육운영 지원
2. '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•김해시사회복지사협회'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정의 교육생 모집 및 홍보, 교육과정에 수반되는 예산의 집행·정산, 계획, 보고 등의 제반 사항 등 원활한 교육운영 지원
3. 기타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및 사업은 상호 협의를 거쳐 진행

김해시복지재단

제4조(협약의 유효기간 및 연장)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합의 서명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, 협약 종료일까지 각 협약기관간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. 또한 협약을 지속할 필요가 없거나 조정이 필요할 때는 상호 협의 하에 해지하거나 협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(기타사항)

1. 본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기관의 상호협의에 따른다.
2. 본 협약은 협약사항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을 경우 필요시 서면통지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.
3. 협약기관은 상호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,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각 당사자가 직인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3월 8 일

김해시복지재단	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	김해시사회복지사협회
대표이사 최 정 규	회장 염 동 문	회장 김 진 경